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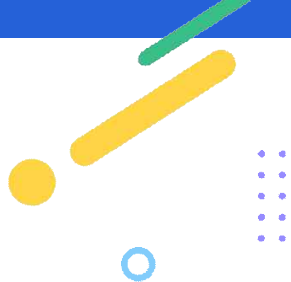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이용자 교육자료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Contents 1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어요!



Chapter 1

개요

Chapter 2

활동지원급
여
신청





Contents 2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어요!



Chapter 1

이용자-
활동지원사
관계형성

Chapter 2

서비스
제공-
이용범위

Chapter 3

이용자-
활동지원사
의 권리

Chapter 4

이용자-
활동지원사
준수사항



Contents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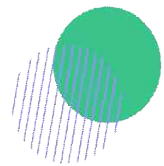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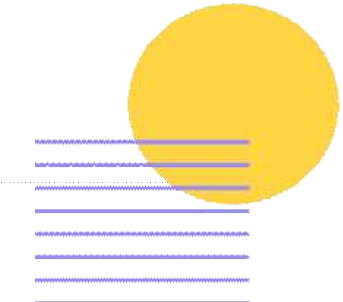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어요!

Chapter 1

바우처카드
사용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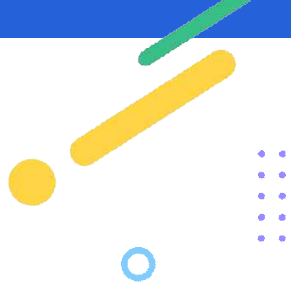
Chapter 2

자주하는
문의사항





Contents 1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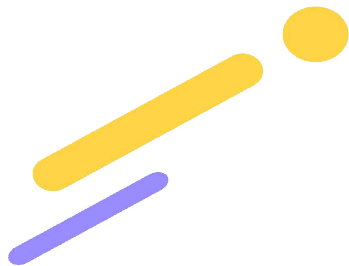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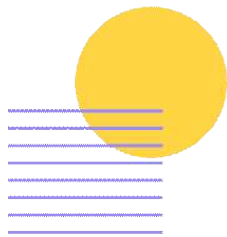
개요

Chapter 2

활동지원금
여
신청



1. 개요



1. 활동지원의 개념

2. 활동지원제도의 목적

1. 개요

1) 활동지원의 개념

활동지원이란?

- 장애로 인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기 결정권

- 기존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선택하고 결정

1. 개요

2) 활동지원 제도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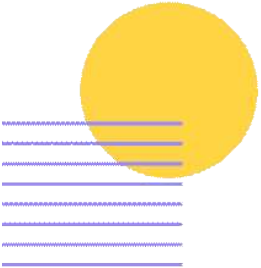
목적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권리와 의무

-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 시간과 내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용에 따른 **책임** 또한 요구됨

2. 활동지원급여 신청



1. 신규신청 2.
갱신신청

3.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4. 보전급여 신청
5. 특별지원급여

2. 활동지원급여 신청 1) 신규 신청

신청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예외

- **65세** 이상이라도, 기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활동지원(보전급여) 이용가능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2. 활동지원급여 신청) 갱신 신청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
- 2019년 7월 이전의 기존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된 수급자는 기존 유효기간까지 수급자격 유지

갱신신청서 제출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30일 전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2. 활동지원급여 신청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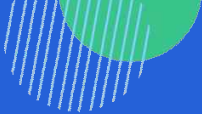
변경신청

- 신체·정신 기능상태,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활동지원급여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제출

2. 활동지원급여 신청 3)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변경신청 추가 제출 서류

변경신청 사유		추가 제출서류
기능상태(X1) 변화		- 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 ※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대상자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사회활동(X2) 변화	직장생활	- 근로자: 4대보험 가입내역 (가입대상 제외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등 - 농업인: 농지대장,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 임업인: 입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 보유내역 *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경영체 확인서도 가능
	학교생활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가구환경(X3) 변화	(1인)독거, 취약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조손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증명서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2. 활동지원급여 신청³⁾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급여 구간 및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
- 원 처분의 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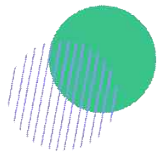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2. 활동지원급여 신청 4) 보전급여 신청

구분	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			
	65세 미만 장애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장기요양 미판정	신청가능	유지가능	신청불가능	유지불가능 (중지)
장기요양 등급외	신청가능	유지가능	신청불가능	유지가능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보전급여 신청가능	보전급여 신청가능	신청불가능	보전급여 신청가능
장기요양 수급권 포기	신청불가능	유지불가능 (중지)	신청불가능	유지불가능 (중지)
장기요양 1-5등급 유효기간 만료	신청불가능	유지불가능 (중지)	신청불가능	유지불가능 (중지)

2. 활동지원급여 신청 5) 특별지원급여의 종류

종류	내용
출산	<p>(대상)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유·사산 포함)한 경우 (신청가능시기)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사산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기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p>
자립준비	<p>(대상)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수급자 (신청가능시기) 시설 퇴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기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p>
보호자 일시부재	<p>(대상)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청가능시기)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기간) 사유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급</p>



Contents 2



Chapter 1

이용자-
활동지원사
관계형성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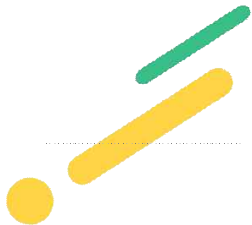
서비스
제공-
이용범위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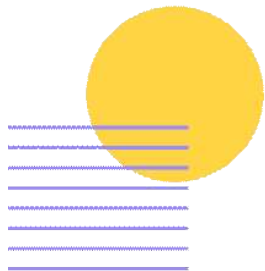
이용자-
활동지원사
의 권리

Chapter 4

이용자-
활동지원사
준수사항



1. 이용자 - 활동지원사 관계형성



1. 갈등의 원인

2. 갈등 해소 방법

1. 이용자-활동지원사 관계형성



1) 갈등의 원인



불명확
한
의사정
보

인격
존중X

금전
문제

서비스제공
범위에 대한
의견차
이
(이해부족)

1. 이용자-활동지원사 관계형성) 갈등해소방법(의사소통)

명확한 표현

- 명확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관계 악화의 주원인

정중한
서비스 요청

-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활동지원사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

1. 이용자-활동지원사 관계형성) 갈등해소방법(의사소통)

피해야 할 어투

- “우선 해 보세요.
- “좋아하는 대로 해도 좋아요.”
- “적당히 해도 됩니다.”

요청 행동

- 활동지원사가 할 일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설명
- 별도의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기
- 활동지원의 방식이 변경되길 원할 때 명확하게 요청

1. 이용자-활동지원사 관계형성

2) 갈등 해소 방법

상호 인격권
존중

타 이용자 -
활동지원사
비교하지 않기

칭찬과 감사

적당한 호칭
(예: 선생님 등)

배려하는
말투, 행동

1. 이용자-활동지원사 관계형성

2) 갈등 해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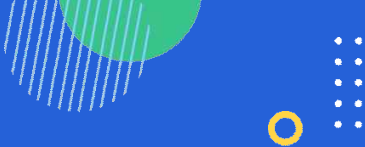
근로환경
배려

적절한
휴식시간

듣기 어려운 짐
(택배 등 이용)

외부일정
상호공지

청소, 세탁
(도구 제공 등)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1. 돌봄서비스 제공
원칙

2. 활동지원서비스 표준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1)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공통 기준

- 이용자(보호자)로부터 취득한 이용자의 성격, 습관, 질병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증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
-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친절하고 정중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이용자(보호자)가 쉽게 설명하고 지도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1)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공통 기준

-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
- 이용자의 심신 상태의 악화 방지에 힘쓰도록 목표를 설정, 계획적으로 실시
-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항상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
- 제공 기관은 이용자 학대, 신체 상해 및 성폭력, 도박 행위 및 성매매 등 예방
- 제공 기관은 이용자의 불편사항 접수 및 조치, 제공 인력 교육 실시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1)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공통 기준

- 제공 기관은 입소보증금 등 돌봄서비스 비용을 담보하는 금전 등을 이용자에게 미리 받을 수 없고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료 등은 직접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 제공 기관은 이용자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 제공 인력은 청결 유지, 서비스와 관련없이 이용자 개인물품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1)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공통 기준

- 이용자가 특정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음
- 제공 인력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이용자 이외의 세탁/조리, 손님의 접대 등 가족이 하는 것이 적당한 행위는 사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음
-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또는 일상적인 가사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사회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음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1)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공통 기준

-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금전을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단, 일상생활 용품 등을 구입할 경우 금전을 맡는 것은 인정되나 당일 내에 정산
- 신체활동의 경우에는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를 포함하거나,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도 실시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2) 활동지원서비스 표준

원칙

이용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이용자와 가족의
생업지원 금지
(근로/ 영리활동)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자녀가 만 10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후 6개월 경과 전까지
이용자의 가족에게
가사지원 가능)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2) 활동지원서비스 표준

신체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표준

가사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2) 활동지원서비스 표준

개인위생관리
(목욕도움, 신체 청결)

건강지원
(처치보조, 체위변경,
복약보조)

신체활동지원



신체기능보조
(배설관리, 옷입기, 몸단장,
식사도움, 실내이동, 신체기능증진)

안전지원
(응급 상황 대응, 안전관리)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2) 활동지원서비스 표준

청소

(이용자 사용공간 중심,
청소용품은 이용자 제공)

취사

(위생적으로 음식 조리,
뒷정리, 이용자 치아 상태
고려)

가사활동지원



세탁

(이용자 결정 존중, 적합한
세탁방법, 세탁물 상태 확인)

장보기

(영수증 등 물품구입내역 정리,
구매 물품 정리, 이용자 요청 시
단독으로 장보기 가능)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2) 활동지원서비스 표준

사회활동지원



외출 동행

(이용자의 외출지원 계획 수립,
목적지에 대한 사전정보, 외출 후
이용자 상태 확인)

의사소통 서비스

(이용자와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이용자의 의사소통 방식 이해)

일상생활지원

(업무 전 준비자료나 정보 확인,
진행과정 설명, 이용자 요청 시
단독으로 수행 가능)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2) 활동지원서비스
표준

그 밖의 제공서비스

이용자의 자녀 양육 보조
(1인에 한함.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정서 지원

서비스 내용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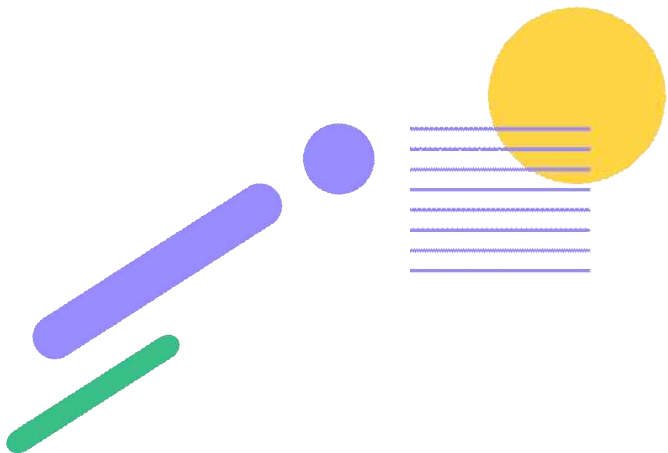
2. 서비스 제공-이용 범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표준

활동지원자
기준

구분	제공 불가능한 대상
배우자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오빠, 형, 누나, 언니,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숙(위·아래), 시누이(위·아래),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등

3. 이용자-활동지원사의 권리



1. 이용자의 권리

2. 활동지원사의 권리

3. 이용자-활동지원사의 권리



1) 이용자의 권리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 선택

구체적인 서비스
요청

인권 보호

3. 이용자-활동지원사의 권리



2) 활동지원사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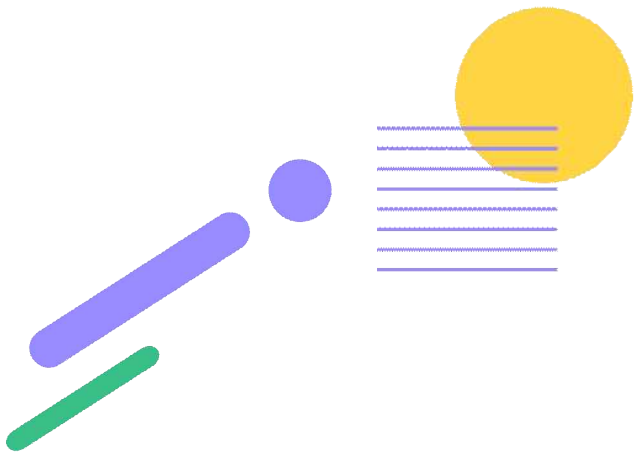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사전 협의된
서비스만 제공

인권 보호

근로자

4. 이용자-활동지원사 준수사항



1. 신고의무

2. 서비스 제공 및 이용

4. 이용자-활동지원사 준수사항)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 이용자, 보호자
-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조치사항

- 신고의무자는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
-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즉시 적의 조치

5. 이용자 - 활동지원사 준수사항

아래의 경우 지자체로 신고

- 노인장기요양 판정 관련 사항, 장애등록 취소
- 보장시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국외이주, 국적상실
-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의 변동 사항
- 특별지원급여 해당/ 제외사유(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 유사서비스 수급 여부(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타 재가 서비스)

4. 이용자 - 활동지원사 준수사항

활동지원사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부당행위
발생시

- 1차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서 해당 이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이용자가 미수용 시 관할 지자체에 관련 내용 보고

활동지원기관 조치사항

4. 이용자 - 활동지원사 준수사항

활동지원사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부당행위 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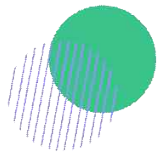
- ① 활동지원기관은 관련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
- ②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이용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및 재발장지 촉구
- ③ 주의 촉구에도 유사/동일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관련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따른
고발 조치

차차체
조치사항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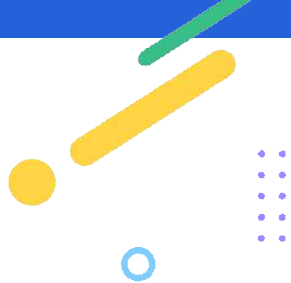
5. 이용자 - 활동지원사 준수사항

2)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이용자의 가족은 대상이 아님
-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된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음
- 활동지원사 교체 요구 등은 최소 14일 이전
-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
-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이해
-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상황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기관에 보고
-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지나친 개입 X



Contents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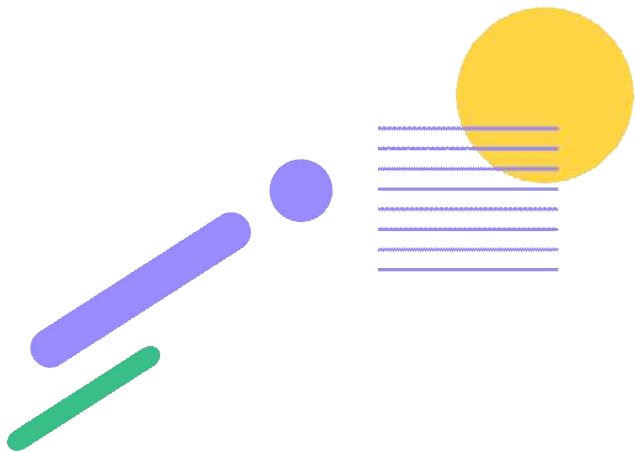
Chapter 1

바우처카드
사용
유의사항

Chapter 2

자주하는
문의사항

1. 바우처카드 사용 유의사항 및 자주하는 문의사항



1. 바우처카드 사용
유의사항

2. 자주하는 문의사항

1. 바우처 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

1) 카드소지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카드

원칙

반드시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보관



1. 바우처 카드 사용 유의사항

2) 결제 원칙

부정수급 관련

소급결제, 중복결제, 연속결제,
심야결제, 선결제, 과다결제 등
이상결제 유형 집중 점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부정사용 적발 시
해당 지자체의 처분
(환수, 기관 지정취소 등)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 현장 점검에 활용

1. 바우처 카드 사용 유의사항

3) 부정수급 사례

A 사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담합
실제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급여 비용 분취
상습적인 바우처 결제

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 통해 적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8개월
수급자 급여제한 15일
기관 환수 및 주의처분

1. 바우처 카드 사용 유의사항

3) 부정수급 사례

B 사례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카드 소지
실제로 서비스 제공 X
상습적인 바우처 결제

제 3자의 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로 적발 적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8개월**
수급자 **급여제한 1개월**
기관 **환수 처분**

1. 바우처 카드 사용 유의사항

3) 부정수급 사례

C 사례

2인의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을 케어
서비스 제공없이 수시로 소급결제
소급결제 사유 불명확함

기관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

기관 환수 처분
활동지원사에게 구상권 청구

1. 바우처 카드 사용 유의사항

3) 부정수급 사례

D 사례

장애인 자녀의 모친이 활동지원사 다른 장애인
자녀의 모친 활동지원사와 교차지원(각각 본인의
자녀에게 서비스 제공), 직계혈족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능

모니터국민연금공단/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및 환수
처분
기관 환수 처분

2. 자주하는 문의사항

1) 이용자 부재 중 활동지원사가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활동지원사는 방해 방문시간동안 이용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용자는 제공된 서비스 전/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바우처 카드하는 것이며 바우처 카드 본인 소지 원칙을 위반
- 예외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가능함
- 각 지자체에서 개별 판단

2. 자주하는 문의사항

2) 활동지원사가 업무 중 자기차량 이용하다가 사고발생..
보상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에 대한 차량 지원 의무가 없음
- 유상운송법 저촉 소지
- 부득이 활동지원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 -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기관이 사전 협의하여 보험가입,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2. 자주하는 문의사항

3) 이용자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
- 근로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공단)을 우선적으로 이용
- 이용가능한 경우
 -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
 -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
 - 신변처리 등 근로지원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 부족

2. 자주하는 문의사항

4)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1박 2일 여행 중 수면시간도 서비스 시간?

- 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면시간은 서비스 제공 시간이 아님
- 단, 이용자의 장애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각 지자체에서 개별 사례에 대해 판단

2. 자주하는 문의사항

5)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도움.. 대중교통 요금은 누가 부담

-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해 발생하는 활동지원사의 운임은 이용자 부담
- 운임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에 발생하는 요금(입장료, 관람료 등)도 이용자가 부담하는게 원칙

2. 자주하는 문의사항

6) 2인 이상의 활동지원사가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 가능함
-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지원사 2인에 한해 인정
- 각 활동지원사별로 1회 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100% 급여 인정
- 해당 서비스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2. 자주하는 문의사항

7) 이용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직장생활 인정 가능?

- 가능함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확인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의 사업소득 확인
-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

2. 자주하는 문의사항

8) 장애인단체 등 무보수 대표이사로 일을 하는 수급자는 직장생활 인정?

- 가능함
- 4대보험이 원칙이나, 이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단체 등록여부 판단을 위한 고유번호증, 이사회 정관도 확인
-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상근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함

2. 자주하는 문의사항

9)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연령 제한은 없음. 단,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 자주하는 문의사항

9)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연령 제한은 없음. 단,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 활동지원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기관(장) 종사자, 활동지원기관(장) 종사자 등
- ※ 다른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로는 근로 가능

2. 자주하는 문의사항

10) 활동지원사 자격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자격취소)

-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사가 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보호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자주하는 문의사항

11)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자격정지)**

-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
- 수급자를 폭행/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폭행/성희롱,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부정수급)

2. 자주하는 문의사항

12) 활동지원사가 이복형제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불가함
- 활동지원사 기준 급여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형제/자매)
- 대법원 판례 상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2. 자주하는 문의사항

13) 윙봉지현사가 이혼한 배우자의 손녀에게 서미스 제공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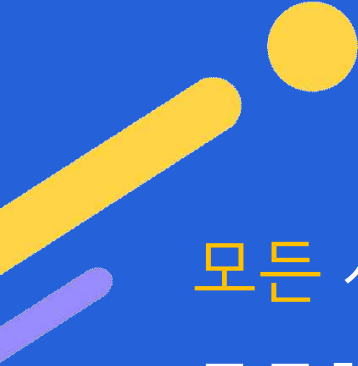
(한도기위하는 개항)

- 불가함
-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자녀와 손자녀는 이혼하더라도 직계 혈족의 관계

2. 자주하는 문의사항

14) 활동지원사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한가요?

- 불가함
-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되며,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음
-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급여 제공이 제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넬슨 만델라 -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